

미국의 기록물 기술 내용표준에 대한 비교분석

- APPM2와 DACS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rchival Description Content Standard in the United States

박진희(Jin-Hee Park)*

초록

웹, XML, EAD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과 기술(description)도구의 출현으로 기존의 도서관자료와 기록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정보교환을 위한 다양한 검색보조도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내용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업계의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ISAD(G) 및 ISAAR(CPF)와 조화를 이루고, MARC과 EAD 등 다양한 검색보조도구의 데이터구조 표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DACS와 기존의 기술규칙인 APPM2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록물 기술규칙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dvent of new technologies and descriptive tools, including the Web, XML, and EAD, have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content standard which can integrate and manage to library materials and archives and accommodate various finding aids for information exchange. This research analyzes both APPM2 and DACS. The former is an old established description rul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keeps step with ISAD(G) and ISAAR(CPF) as adopting the international trend of archives and is able to describe the data structure of a variety of finding aids including MARC, EAD, etc. As a result, it presents the points to take into consideration as making descriptive rules about our archives.

키워드: 기록물 기술, 내용표준, 기술규칙
archival description, content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rules, APPM2, DACS, CUSTARD-project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uly74@naver.com)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11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12월 7일

1. 서론

기록물과 도서관 자료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보존소와 도서관이 공유시스템을 설계하는 목적은 두 기관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정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원의 출처에 상관없이 기록물과 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은 통합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는 모든 자료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계의 ISBD(G)(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General)를 기반으로 하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ISAD(G)(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General)를 제정하였다. 이에 외국의 경우는 이미 제정된 각국의 기술표준을 기록물 국제표준인 ISAD(G)2 체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ISAD(G)2를 수용하는 이유는 이 표준의 서언에 명시되어 있듯이 기록물 정보를 검색, 교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고, 기록물의 기술단위의 성격이나 범위에 상관없이 모든 기록물의 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표준과 연계하여 사용하거나 국가표준의 개발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이다. Eeva(2000)는 ISAD(G)와 ISBD(G)의 핵심수준의 기술요소가 일치함을 제시하면서 도서관의 자료와 기록물이 통합되어 관리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과 웹, XML,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

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과 기술도구의 출현 등의 정보환경의 변화는 검색도구를 위한 내용표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웹을 통한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기록물과 간행물의 통합을 위한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의 아키비스트협회는 기록물의 특수성을 최대한 표현하면서 간행물과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CUSTARD: Canadian-U.S Task Force on Archival Description)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ISAD(G)2의 구조를 수용하면서 APPM2(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 2nd)와 RAD(Rules Archival Description)를 조화시키는 기술편람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실무에 있어서의 차이점으로 캐나다는 CUSTARD 초안을 RAD의 개정판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하기로 하고, 미국은 그 초안을 바탕으로 DACS(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를 제정하였다. DACS는 MARC 뿐만 아니라 EAD 데이터구조 표준을 모두 수용하는 기록물 기술내용 표준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물 기술을 위한 기술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여타 기록관리기관들은 ISAD(G)2를 준용하여 기록물 기술표준을 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예관법률' 및 동 법령 시행령에서는 국공립대학에 의무적으로 보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으로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국공립대학을 위시하여 보존소 설치 및 기록물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서관 관계에서도 기록물을 도서관 자료와 함께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 기술표준은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기술표준을 준용하면서 동시에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간행물과 기록물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규칙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RC 뿐만 아니라 EAD 데이터구조 표준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DACS 기술규칙을 분석함으로써 차후 제정될 우리나라 기록물 기술규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미국의 기록물 기술 내용표준의 제정과정과 주요 구성내용을 살펴보고, APPM2와 DACS의 각 기술요소별 기술규칙을 비교분석하였다. 기록물 기술부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록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2. 미국의 기록물 기술 내용표준

본 장에서는 미국의 기록물 기술 내용표준의 제정배경 및 주요 구성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2.1 APPM2

APPM2는 미국의 기록물기술을 위한 국가표준으로 문자 중심의 텍스트 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를 포괄하는 기술표준이다. 이 표준의 목적은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기타 기관에서 자관 소장물 자료를 기록물 지향적으로 편목 할 때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89).

미국에서 기록물 기술표준화는 도서관과 정보과학계 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고, 도서관과 서지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과 불기분의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AACR2(Anglo American Cataloging Rules 2nd)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능한 한 유지하는 기록물 기술표준을 개발하였다.

1983년 미의회 도서관의 주체로 초판이 발행되었고, 1989년 2판이 개정되었다. APPM2는 USMARC AMC(United States MARC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ontrol)와의 통합을 시도하여 기술요소의 명칭과 정의를 USMARC 필드에 가깝도록 변경하였으며, USMARC 필드에는 있으나 APPM1에는 없었던 기술요소를 추가하였고, 불분명한 설명을 보완하고, 비도서자료의 기록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판은 USMARC 포맷에 맞추어 기록자료를 목록할 때 APPM2와 AACR2R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PPM2는 개별 아이템보다는 컬렉션과 그룹 계층에서 기록의 생산과 역사적 배경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표준은 기록물 기술과 서지기술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기록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일표제를 선별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PPM2는 영국의 국가기록물 기술규칙인 MAD(Manual of Archival Description)와는 달리 기록물 관리행위에 대한 기술 즉 평

가, 처리, 보존, 참조에 대한 기술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기록물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측면이지만 개별보존소의 요구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APPM2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AACR2의 영역구분을 그대로 채용하여 기술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영역은 표제 및 책임표시영역, 판 영역, 현대기술영역, 주기영역으로 나뉜다.

2.2 DACS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는 2001년 국제인문기부금을 받아서 CUSTARD라는 미국-캐나다 공동 기술표준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표준을 산출했다. 이 내용표준은 APPM과 RAD(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를 대체할 수 있고, ISAD(G)2와 ISAAR(CPF)(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의 모든 기술요소와 일치한다.

1996년 EAD가 게시되었을 당시 APPM의 개정시 목록 레코드에 대한 규칙 뿐만 아니라 검색보조도구에 대한 규칙도 통합시키고, 두개의 국제표준인 ISAD(G), ISAAR(CPF)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용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공동 표준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봄, 캐나다와 미국의 실무에 있어서의 상당한 차이점으로 인해 공동 내용표준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결국, 캐나다는 CUSTARD 초안을 RAD의 개정판

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하기로 하고, 미국 아키비스트들은 그 초안에서 DACS를 추출했다.

APPM과 같이 DACS는 부분적으로 기타 목록코드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AACR2 4장의 규칙을 대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미국의 DACS는 목록레코드와 완전한 검색보조도구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 및 모든 계층의 기록물 자료와 필사본 자료를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DACS는 ISAD(G)2의 26개 요소와 ISAAR(CPF)의 요소를 실제로 일부 경우에서 그대로 통합하여 ISAD(G)2의 식별영역의 기술계층을 독립된 기술요소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ISAD(G)의 영역별 요소와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ISAD(G)2와의 차이점은 기술계층으로서 ISAD(G)2에서는 정리 및 기술의 5가지 계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복잡한 기록물은 이보다 더 많은 계층을 포함하고 있어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술계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계층요소를 단순하게 표준방식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계층의 기술정보를 모두 연결시키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DACS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보시스템에서 다양한 기술계층을 모두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MARC 레코드와의 링크, EAD의 내부요소, 관계 DB의 연관테이블, 기타 지역적 해결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3. APPM2, DACS의 기술규칙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APPM2와 DACS의 기본구조

와 기술원칙 그리고 각 기술요소별 기술규칙을 비교분석하였다. ISAD(G)2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된 DACS와 APPM2를 비교함으로써 반영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3. 1 기본 구조의 비교분석

APPM2는 AACR2R에서와 같이 2개의 주요한 부분, 즉 기술과 표목,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단 하나의 장으로 1장은 기록물과 매뉴스크립트 자료의 기술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제 1장은 일반규칙을 제외한 7개의 기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 및 책임사항, 판사항, 물리적기술사항, 주기사항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제 2부 표목과 통일표제는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접근점의 선정(제 2장), 개인명표목(제 3장), 지명표목(제 4장), 단체명표목(제 5장) 및 통일표제(제 6장)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에는 APPM2로 기술한 목록레코드의 실례와 USMARC AMC의 태깅실례, 그리고 APPM2의 각 기술요소들과 USMARC AMC의 표시기호 및 식별기호와의 대등표가 수록되어 있다.

반면에 DACS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제 1부 기록물 기술, 2부 생산자 기술, 3부 이름 형식,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 기록물 기술부분에서는 APPM2의 주기영역(1.7)에 속하는 요소들을 다른 개념의 영역이나 분리된 장으로서 새롭게 배열하였다. 기술요소에 대해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숫자체계를 단순화시켰다. 각각의 기술요소내에서는 해당 요소에 대한 규칙만을 제시한다. 이

것에 대한 예외사항은 12장에서 14장으로 이는 AACR2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AACR2의 숫자체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DACS는 서지시리즈, 대등표제, 책임표시 등과 같은 기록물 자료의 기술과 거의 연관성이 없는 APPM의 영역을 삭제하였다. 제 2부 생산자 기술에서는 기록물의 생산배경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기록물의 구조와 배경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자료의 표제기술에 생산자명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기록물 기술자료를 생산, 수집, 축적, 유지, 이용하는데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가문, 기관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9장에서는 기록물 자료를 생산하는데 주된 책임이 있는 개인, 가문, 기관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한다. 10장은 서지데이터 및 행정이력을 기술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11장은 ISAAR(CPF)의 구조에 기반하여 기록물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 3부는 이름형식에 관한 것으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부에서는 기록물과 관련된 개인명, 가문명, 기관명을 해당 기록물의 생산자, 관리자 또는 주체로서 표준형식으로 작성하는 규칙을 제시한다. 12장은 개인명과 가문명을 작성하기 위한 규칙을, 13장은 기관명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지리명에 대한 규칙, 14장은 기관명을 작성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부록에는 용어집과 기타 내용표준과 구조표준이 수록되어 있으며 APPM과 DACS, ISAD(G), EAD, MARC, ISAAR(CPF)간의 대등표를 제시하고 있다.

3. 2 기술원칙의 비교분석

APPM2는 기록물 기술과 관련하여 원전주의 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기록물의 본래 기능과 목적에 따라 기술하고 배열하는 것은 현대 기록학의 기본원칙이며 기록물의 원전존중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기록물의 무결성과 역사적 정확성이 보증되며 기록물의 본 순서에 내재되어 있는 내적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아키비스트가 원전존중의 원칙이나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수집된 인위적인 수집물이나 컬렉션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DACS에서는 APPM2 보다 더 구체적으로 DACS 규칙의 기반이 된 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이론적 저작물과 기타 다양한 정보원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록물 원칙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을 개괄한 것이다. 원칙에서는 기록물 자료의 속성과 이를 기술에서 명백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원칙성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8가지로 다음과 같다.

- 1 원칙 : 보존소의 레코드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 2 원칙 : 원전존중의 원칙은 기록물 정리 및 기술의 원칙이다.
- 3 원칙 : 정리는 자료의 범위 내의 그룹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4 원칙 : 기술은 정리를 반영한다
- 5 원칙 : 기술규칙은 형태,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기록물 자료에 적용된다.
- 6 원칙 : 기록물 기술원칙은 개인, 단체, 가

문이 생산한 레코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 원칙 : 기록물 기술은 다양한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세수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7.1 원칙 : 기술계층은 정리계층과 일치한다.

7.2 원칙 : 기술계층간의 관련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7.3 원칙 : 각 기술계층에서 제시된 정보는 그 계층에 적합해야 한다.

8 원칙 : 기록물 자체 뿐만 아니라 기록물 생산자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1, 2원칙은 기록물의 속성에 관한 것이다. 이 원칙은 기록물 컬렉션이 개인과 조직 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며 그 이후로 기록된 기억으로서 이용된다는 점과 레코드와 이를 만들어 낸 활동간의 분명한 관련성이 다른 문헌자원과 기록물을 구분시키는 특성임을 반영하고 있다.

3, 4원칙은 정리 및 기술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원칙의 전제는 기록물의 정리 및 기술기능은 원전존중의 원칙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두가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정리는 합의된 기록물 원칙에 따라 문헌을 조직하는 지적, 물리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기술은 기록물 자료를 식별하고, 생산된 정황과 레코드체계를 설명하는 정보를 포착, 대조, 분석, 조직함으로써 기록물 자료를 정확하게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5, 6, 7원칙은 기록물 기술의 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 원칙의 전제는 기록물은 속성과 원전에

따라 다양하며, 기록물 기술시 이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기록물 자료가 조직, 지역, 국가 기술 체계내에서 일관성 있게 기술되기 위해서는 규칙이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소장된 다양한 형식과 매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8원칙은 기록물 자료의 생산자와 관련된 것으로 기록물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측면은 기록물이 생산된 배경에 대한 기술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3. 3 각 요소별 기술규칙 분석

본 절에서는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APPM2와 DACS의 정보원과 기술 요소별 기술규칙을 비교분석하였다.

3. 3. 1 정보원

APPM2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정보원은 해당 자료에 대한 검색보조도구이다. 이 정보원이 없을 경우에는 출처와 이관레코드, 적절한 참고정보원을 통해 보충한 자료 자체를 주정보원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일 기록물인 경우 기록물 자체를 주정보원으로 취급하

되 표제페이지, 장(절)의 제목, 표목, 판권기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본문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주정보원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정보원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 컬렉션/아이템에 대한 출판 및 미출판된 기술, b) 참고자료, c) 컬렉션/아이템의 또다른 필사본 사본, d) 컬렉션/아이템의 출판된 판, e) 기타정보원 등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DACS는 기록물 기술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가 해당 정보원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대부분은 해당 자료 자체가 정보원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실무와는 다르게 아카비스트들이 기록물 자료로부터 직접 기술정보를 옮겨 적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해당자료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요약하거나 삽입하고, 외부 정보원 즉 이관문서와 기타 수집 레코드, 파일계획, 참고도서 등을 통해 보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에는 하나 이상의 규정된 정보원이 제시되어 있다. 각 요소별 해당 정보원은 <표 1>과 같다.

<표 1> DACS 요소별 정보원

기술요소	정보원
1. 기술계층	-
2. 식별요소군	
2.1 참조코드	국가 및 국제코드표
2.2 보존소명 및 위치	기관정책 및 절차
2.3 표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해당기록물의 내적 증거와 레코드 일정보 기술자와의 면담 기술자료에 대한 사본이나 다른 판의 표제와 같은 외부정보원), AACR의 해당 장에 규정된 정보원
2.4 일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해당 기록물의 내적증거)

2.5 수량	해당 기록물 자체, 이관문서
2.6 생산자명	해당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기술정보
2.7 행정연혁/개인이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3. 내용 및 구조요소군	
3.1 범위 및 내용	해당 기록물 자체, 관련문헌
3.2 정리체계	해당 기록물 자체
4. 접근요소군	
4.1 열람제한조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기증자 협약서, 법령, 규정, 보존소 정책)
4.2 물리적 열람	해당 기록물 자체, 보존소 정책
4.3 기술적 열람	해당 기록물 자체, 보존소 정책
4.4 복제 및 이용제한조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기증자 협약서, 법령, 규정, 보존소 정책 등)
4.5 언어 및 스크립트	해당 기록물 자체
4.6 검색보조도구	기타 검색보조도구
5. 수집과 평가요소군	
5.1 보관이력	이관문서(기증자 협약서)
5.2 수집의 직접적 출처	이관문서(기증 증서)
5.3 평가·폐기·처리일정 정보	보존소 문서(유지 일정표)
5.4 추가	기증자 협약서, 레코드일정표, 기관정책
6. 연관자료요소군	
6.1 원본의 존재 및 위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해당자료, 이관문서, 기타 보존소의 레코드 등)
6.2 사본의 존재 및 위치	보존소 레코드, 해당 기록물 자체
6.3 관련기록물자료	기록물 자료에 대한 기타 기술
6.4 출판주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7. 주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8. 기술통제	기관정책 및 절차

3. 3. 2 기록물 기술요소

APPM2와 DACS,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물 기술에 필요한 기술요소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DACS에서는 AP-PM2의 표제 및 책임표시영역의 일반자료표시, 대등표제, 기타표제정보, 책임표시, 종합표제가 없는 아이tem 요소와 판영역, 물리적 기술영역의 기타 물리적 상세사항, 크기, 주기영역의 연관저록, 인용, 기록물 기술에 대한 인용요소 그리고 통일표제를 제외하였다. DACS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록물 자료와 거의 연관이 없는 영역 및 요소들을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영역과 요소는 기록물의 유일성 특성에 따

른 기록물 자체보다는 단행본, 총서, 간행물 등 도서관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APPM2가 도서관의 목록규칙인 AACR2의 골격을 토대로 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DACS는 ISAD(G)2 요소를 수용하여 APPM2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기술계층, 식별요소, 참조코드, 기술적 열람 평가·폐기·처리일정정보, 관련기록물자료, 전거레코드를 추가하였다.

3. 3. 3 기술규칙

DACS의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APPM2와 DACS의 공통 기술요소 및 추가된 기술요소의 규칙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APPM2, DACS, ISAD(G)2 기술요소 비교

APPM2	DACS	ISAD(G)2
<i>1.1 표제 및 책임표시영역</i>		
1.1B 본표제	2.3 표제	3.1.2 표제
1.1B5 일자	2.4 일자	3.1.3 일자
1.1C 일반자료표시	-	-
1.1D 대등표제	-	-
1.1E 기타표제정보	-	-
1.1F 책임표시	-	-
1.1G 종합표제가 없는 아이템	-	-
<i>1.2 판영역</i>	-	-
<i>1.5 물리적 기술영역</i>		
1.5B 수량	2.5 수량	3.1.5 기술단위의 수량과 매체
1.5C 기타 물리적 상세사항	-	-
1.5D 크기	-	-
<i>1.7 주기영역</i>		
1.7B1 이력 새력	2.7 행정연혁/개인이력	3.2.2 행정연혁/개인이력
1.7B2 범위 내용/초록	3.1 범위 및 내용	3.3.1 범위와 내용
1.7B3 연관지록	-	-
1.7B4 기타 이용가능한 형식	6.2.3 복제본의 존재 및 위치	-
1.7B5 복제	6.1 원본의 존재 및 위치	3.5.1 원본의 존재 및 위치
1.7B6 원본/사본위치	6.1 원본의 존재 및 위치 /6.2.5사본의 존재 및 위치	3.5.1 원본의 존재 및 위치, 3.5.2사본의 존재 및 위치
1.7B7 조직 배열	3.2 정리체계	3.3.4 정리체계
1.7B8 언어	4.5 언어 및 스크립트	3.4.3 언어 및 스크립트
1.7B9 출처	5.1 보관이력	3.2.3 기록물이력
1.7B10 수집의 직접적 출처	5.2 수집의 직접적 출처	3.2.4 수집의 직접적 출처
1.7B11 열람제한	4.1 열람제한조건, 4.2물리적 열람, 4.3기술적 열람	3.4.1 열람조건, 3.4.4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1.7B12 이용 및 복제조건	4.4 복제 및 이용제한조건	3.4.2 복제조건
1.7B13 누가색인/검색보조도구	4.6 검색보조도구	3.4.5 검색보조도구
1.7B14 인용	-	-
1.7B15 기록물 기술에 대한 인용	-	-
1.7B16 출판	6.4 출판주기	3.5.4 출판주기
1.7B17 일반주기	7 주기	3.6.1 주기
2 접근점 선정	2.6 생산자명, 9장 생산자 식별	3.2.1 생산자명
3 개인명 표목	12 개인명 및 가문명 형식	-
4 지명	13 지명 형식	-
5 기관명 표목	14 기관명 형식	-
6 통일표제	-	-
	1 기술계층	3.1.4 기술계층
	2.1 참조코드	3.1.1 참조코드
	2.2 보존소명 및 위치	-
	5.3.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3.3.2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5.4 추가	3.3.3 추가
	6.3 관련기록물자료	3.5.3 관련기술단위
	8 기술통제	3.7.1 아키비스트 주기 / 3.7.2 규칙과 협약 / 3.7.3 기술일자
	11 전거레코드	-

1) 본표제(APPM2 1.1B) / 표제(DACS 2.3)

APPM2에서 본표제는 공식표제와 보충표제로 구분된다. 공식표제는 단일 기록물 아이탬이나 기록물 컬렉션 또는 레코드 시리즈가 장(절) 제목이나 머리말 등의 표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공식표제로 간주하고, 기록물에 나타나는 어법, 순서, 철자 그대로 기술하되 구두점과 대문자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표제는 편목자가 제시하는 표제로서 대부분의 기록물 자료에는 공식표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된 목록이나 검색 도구, 기록물을 직접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ACS에서도 공식표제와 보충표제를 작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공식표제를 기록할 경우에는 AACR2의 해당 장에 기술된 것처럼 정보원의 정보를 옮겨 적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충표제는 해당 기록물의 내적 증거나 레코드 일정표, 기증자와의 면담 기록물의 다른 판에 나타난 표제 등과 같은 외적 정보원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의 정보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제정보를 보충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주로 이름이나 해당자료의 속성을 나타내는 어휘로 구성된 간략표제를 작성하며 선택사항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충표제와 기술단위의 내용 초록을 혼동해서는 안되며 보충표제는 가능한한 간결하게 제시하며 해당 단위의 내용은 범위 및 내용요소에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일자(APPM2 1.1B5) / (DACS 2.4)

APPM2는 기록물 기술을 위해 일자사항을

사용하지 않는다. APPM2에서 일자는 표제 및 책임표시영역의 부분으로서 표제의 마지막 요소로 일자를 항상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 컬렉션의 경우에는 모든 일자를 총괄하는 포괄일자나 일정기간을 기술하고, 단일 기록물의 경우에는 정확한 일자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자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외부정보원에서 채기하여 각괄호 안에 기술한다. 그러나 이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no year, no month, no day' 등으로 기술하며 일자나 근접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undated' 등을 일자 대신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최초 생산일자 다음에 '-[ongoing]'을 기술하여 기록물이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사항으로 기록물의 가장 중요한 일자나 가장 큰 일자를 추가할 수 있는데 모든 생산일자를 총괄하는 일자를 항상 앞세워 기술하고, 총괄적인 일자 없이 단독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DACS에서는 기록물의 생산, 수집, 축적, 유지 및 이용과 관련된 일자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자요소에는 일자의 유형과 일자의 형태를 기술한다. 그러나 복제일자는 내용 및 범위요소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기록물이 원본이며 보존소에서 사본을 이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본의 존재와 위치에서 그 정보를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생산일자와 레코드 유지 활동 일자, 출판일자, 방송일자 등 해당기록물에 속하는 일자를 기술한다. 대안으로 보존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를 분명하게 명칭을

붙여 복수의 일자유형을 기록하고, 이를 범위 및 내용요소에서 설명해야 한다. 서구식 아라비아 숫자체계로 연도를 기술하고, 서력기원이 아닐 경우에는 기록물에 나타난 대로 기술하며 서력기년을 원괄호에 기재한다. 특정 역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기에 기재한다.

DACS는 일련의 기간일자로 단일일자를 구분하여 기술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포괄 일자의 경우 가장 오래된 일자와 최근의 일자를 기술하며 추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보존소에서 보관 중인 소장자료에 속하는 포괄일자를 기술한다. 추가에 대한 정보는 추가요소에 기술해야 하며 추가 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정보를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APPM2와는 달리 '1979-나 '1979- (ongoing)'이 아닌 '1979-1993'으로 기술해야 한다. 추정일자의 경우는 선택사항으로 포괄일자와 다를 경우 '추정', '대략' 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기재할 수 있으며 포괄일자 없이 기재할 수 없다. 선택사항으로 해당기록물의 문서의 연대기적 순서에서 상당한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추정일자가 잘못된 곳에서는 컴마로 변칙일자를 기술한다. 예를 들면 '1827, 1952-1978'과 같다. 그리고 해당 자료의 일자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범위 및 내용요소에서 이를 기술한다.

단일일자의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일자 즉, 월일을 기술한다. 정확한 단일일자일 때 '연 월-일'순으로 표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어떠한 일자도 없고, 해당 보존소에서 추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undated'를 사용한다. 그러나 'n.d' 's.d' 와 같은 축약은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량(APPM2 1.5B)

APPM2는 기록물의 수량과 매체를 물리적 기술사항에서 다루고 있으며 '기록물의 수량 : 기타 물리적 상세사항 ; 크기'의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기록물의 수량과 크기에 대해서는 기록물의 형태, 즉 기록물 컬렉션, 단일 필사본, 기록물의 마이크로폼 및 기타형태의 사본에 따라 달리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의 수량에 대해서는 기록물 컬렉션의 경우, 서가길이나 용적피트수 또는 아이템 총수를 기술하고, 단일 필사본의 경우에는 개별 편지, 일기, 저널, 회계장부, 스크랩북, 서신철, 문학작품의 필사본 등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의 마이크로폼 및 기타 형태의 사본의 수량에 대해서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소장하고 있을 경우 두 개의 분리된 사항 즉, 원본과 사본의 수량을 각각 표현하고, 원본의 마이크로폼이나 디지털 사본만을 소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마이크로폼필름 릴, 마이크로필름 카세트나 카트리지, 마이크로피쉬, 애플퓨터카드, 마이크로오펜크, 콤팩트디스크 등의 총수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타 물리적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보존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타 물리적 세부사항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물의 크기는 선택사항으로 기록물 컬렉션의 경우에는 아이템, 컨테이너나 볼륨의 높이가 같으면 센티미터로 기술하고,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큰 아이템의 크기를 기술하고 'or smaller'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일 필사본의 경우, 미제본 단일 필사본의 높이를 센티미터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기록물 컬렉션과 단일 필사본 모두 너비의 높이의 1/2보다 작거나 높이보다 크면 높이 × 너비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마이크로 폼은 높이 × 너비 형태로 마이크로오펜크와 애플퓨터카드의 크기를 센티미터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ACS는 기술 대상자료의 크기와 물리적 속성을 지시하기 위해 수량과 크기의 표현 또는 매체 유형 두 가지로 기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유형이 표제에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크기 요소에서 반복하지 않으며 기록물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속성에 대한 정보는 물리적 접근요소에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DACS는 보존소에서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결정하지 않은 한 아라비아 숫자로 도량형법을 이용하여 물리적 크기, 컨테이너나 용기, 아이템수, 자료유형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물의 물리적 크기를 서가길이나 용적피트수, 아이템수, 컨테이너나 용기수로서 수량화해야 한다. 선택사항으로 자료의 유형을 수량화할 수 있으며 자료의 유형은 AACR2과 다양한 시소러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픽자료, 문자자료, 지도자료, 건축도면, 음반자료 등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리적 규모에 대해서 수량화할 수 있다. 그리고 수량의 대등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괄호 안에 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선택사항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수의 규모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기술대상자료가 많거나 그 수를 확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략의 수치를 기술할 수 있으며 '대략' 약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추정되었음을 지시해야 한다.

4) 이력/내력(APPM2 1.7B1) / 행정연혁 및 개인이력 (DACS 2.7)

APPM2는 기록물의 속성이나 범위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해당 기록물의 생산자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출생지, 거주지, 여러 형태의 이름, 직업(기록물과 관련이 있을 경우), 주요업적(기록물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생몰년 등에 대해 기술하고, 기관의 경우에는 기능, 목적, 기관사, 행정계층, 전신 및 후신의 다양한 명칭 등을 주기사항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주기는 간략한 요약주기와 상세주기로 나누어 기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록 레코드의 경우 상세한 행정연혁이나 개인이력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DACS는 행정연혁 및 개인이력 정보를 기록물 기술의 일부로서 기술하는 경우와 개별적인 전자시스템으로 유지할 경우로 나누어 제2부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기록물 기술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가장 상위계층에서 전체로서 기록물을 생산, 수집, 축적, 유지 이용하는 개인, 가문, 기관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사항으로는 하위기술계층에서 하위단위의 생산자와 전체로서의 기록물 생산자가 다를 경우 하위단위의 생산자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록물의 주된 책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행정연혁 및 개인이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상위계층에서 이 요소를 기술할 경우와 전자파일로 관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하위요소는 개인 및 가문과 기관으로 구분된다. 개인 및 가문의 서지이력에는 이름, 일자, 거주지, 학력, 직업 및 활동, 기타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관의 경우에는 설립일자 및 해체일자, 지역, 근거법령, 기능, 행정체계, 전신 및 후신, 기관명, 주요 CEO명, 기타 주요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ISAAR(CPF)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로 DACS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제 기술 표준을 수용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APPM2에서는 행정연혁 및 개인이력을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DACS에서는 전 거래코드나 다양한 검색보조도구의 경우 설명적인 기술, 연대기 혹은 양자 모두로 구성하여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주석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APPM2는 USMARC 과 양립할 수 있도록 제정된데 반해 DACS는 MARC21 뿐만 아니라 그 외의 EAD 등과 같은 다양한 검색보조도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5) 범위, 내용/초록(APPM2 1.7B2) / 범위 및 내용(DACS 3.1)

APPM2는 기록물의 일반적인 내용 특성 범위와 관련 있는 정보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 컬렉션의 경우에는 기록물의 특정 유형과 자료표현형식, 일자, 기록물 생산과 관련 있는 기능이나 업무, 주제·이벤트·개인·장소 등을 순서대로 기술해야 한다. 단일 필사본의 경우에는 아이템의 유형, 편지는 수신인(표제사항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연설 일자, 설교일자 등(표제에 제시된 일자와 다를 경우), 주요 주제, 개인, 장소 등을 기술하여 아이템 내용을 요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DACS는 범위 및 내용요소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해당 기록물을 생산해 낸 기능, 활동, 처리과정, 문서형식이나 레코드의 지적 특성(의사록, 일기, 보고서, 문서 등), 내용일자 해당 기록물이 속하는 지역이나 장소, 주제, 자료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유용한 기타 정보 등이 해당된다. 일반규칙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유형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기록물 평가 결정 이외의 이유로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고, 기록물에 결혼증명서와 같은 공식문서가 포함되어 있을 시에는 문서에 기록된 정보를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록물이 사본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시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제 일자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

6) 기타 이용가능한 형식(APPM2 1.7B4) / 사본의 존재 및 위치(DACS 6.2.3)

APPM2는 보존소가 해당 기록물의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장보존소에서 이용가능한 기록물의 다른 물리적 형태나 출판 형태에 대한 정보를 주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출처, 주문번호, 조건 등 입수정보를 기술한다. 기술 정보를 분명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도입어구를 하위요소에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lso available on microfilm; source: Library of Congress Photoduplication Service, Washington, D.C. 20540; order no. : 18,447” 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DACS는 사본의 존재 및 위치요소에서 APPM2의 이용가능한 형식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APPM2와 마찬가지로 동일 기관에서 원본과 사본을 이용할 수 있고, 해당기록물의 일

부나 전체의 사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본 매체, 사본위치, 식별기호, 사본 이용조건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거리 접근을 통해 이용가능할 때에는 접근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7) 복제(APPM2 1.7B5) / 원본의 존재 및 위치(DACS 6.1)

APPM2는 해당 기록물이 사본일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제유형, 복제처, 복제 책임기관, 복제일자, 복제물의 물리적 형태사항, 서지적 시리즈 사항(해당시)에 대해 기술한다. 원본이 복제 이후에 훼손되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또한 기술 정보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 도입어구를 하위요소에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n part, photocopies. Copied a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Southern Historical Collection; 1978” 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DACS는 APPM2의 복제요소를 원본의 존재 및 위치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당 자료가 사본이고 원본이 다른 곳에 위치할 경우, 원본의 위치를 제시한다. 선택사항으로 기밀이 아닐 경우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의 주소와 기타 연락정보를 기술한다. 이때 원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기술하며 선택사항으로 원본의 위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정보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원본/사본 위치(APPM2 1.7B6) / 원본의 존재 및 위치(DACS 6.1), 사본의 존재 및 위치(DACS 6.2)

APPM2는 해당기록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보존소명과 주소(선택사항)를 기술 하고, 이때 관리자명, 관리보존소명, 주소, 보존소의 주, 전화번호를 하위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Originals in’, ‘Photocopies in’ 등의 도입어를 사용하여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ACS는 원본과 사본의 존재 및 위치를 개별적인 요소로서 규정하고 있다. 원본의 존재 및 위치요소에서는 해당 자료가 사본이고 원본이 다른 곳에 위치할 경우, 원본의 위치를 제시한다. 선택사항으로 기밀이 아닐 경우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의 주소와 기타 연락정보를 기술한다. 이때 원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기술하며 선택사항으로 원본의 위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정보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본의 존재 및 위치요소에서는 동일기관에서 원본과 사본을 이용가능한 경우와 다른 기관에서 사본이 이용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본 매체, 사본위치, 식별기호, 사본 이용조건에 대해서 기술해야 한다. 원거리 접근을 통해 이용가능할 때에는 접근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또한 해당시 자료의 다양한 생성시기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보존소의 연락정보를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9) 조직, 배열(APPM2 1.7B7) / 정리체계 (DACS 3.2)

APPM2는 배열에 대한 기술을 조직과 배열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조직은 기록물을 하위단위로 나누는 방법(레코드 그룹내의 시리즈, 시리즈 내의 서브시리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series : I. General correspondence, 1812-1868; II. William Q. Force papers, 1843-1944; ... ; X. Force manuscripts in the collections of the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and the Maryland Hall of Records”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배열은 기술된 단위내에서의 기록물의 자료배열 패턴(연대순, 알파벳순 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Arrangement : Chronological within record type(minutes, general memoranda, legislative memoranda etc.) in each volume”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DACS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된 다양한 집합체의 현 정리체계와 관련성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사항으로 구성파일이나 아이템의 순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며 생산자나 아키비스트에 의한 원질서 유지사항이나 재구성 사항 등과 같은 다른 측면의 배열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0) 언어(APPM2 1.7B) / 언어 및 스크립트(DACS 4.5)

APPM2에서는 다른 곳에서 주기되지 않았을 경우나 기타 기술요소에서 알 수 없을 경우에 기록물의 언어에 대해 주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특정 알파벳이나 기호체계 등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Chiefly in Russian longhand”, “In Swedish”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DACS는 언어 및 스크립트 요소를 기술하거나 적합한 ISO언어코드(ISO 639-1, ISO 639-2 : 국제표준언어코드)나 ISO 자체코드(ISO 15924 : 국제표준 자체명칭)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자료의 언어를 기술하고, 특이한 문자, 자체, 기호체계, 약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출처(APPM2 1.7B9) / 보관이력 (DACS 5.1)

APPM2에서는 기록물의 보존내력과 관련된 정보주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록물의 보존과 소유권의 대조 및 변경일자(일자를 포함하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ACS는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 책임 보관에 대한 계속된 이전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이 일어난 일자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단위를 보존소가 직접 수집하였을 때에는 기증자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수집의 직접적 출처에 제시해야 한다.

12) 수집의 직접적 출처(APPM2 1.7B10) / (DACS 5.2)

APPM2에서는 기록물의 기증자나 출처(바로 이전 보존자), 주소, 입수수단이나 방법(기증, 구입, 기탁, 이관 등), 입수일자를 기술하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Source unknown’과 같이 출처를 알 수 없음을 의미하는 어구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번호나 구입가격, 기록물과 출처의 관련성, 기타 관련 정보를 선택사항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DACS는 기술단위를 수집한 출처와 수집일자, 기밀이 아닐 경우에는 수집방법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선택사항으로 기록물과 출처 및 기증자와의 관련성, 적합하다고 판단된 정보 예를 들어 출처 및 기증자의 주소, 기관 가격, 기금정보원 등이 기밀이 아닐 경우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관번호나 참조코드와 같은 수집과 관련된 식별기호를 선택사항으로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3) 열람제한(APPM2 1.7B11) / 열람제한 조건(DACS 4.1), 물리적 열람(DACS 4.2), 기술적 열람(DACS 4.3)

APPM2는 기록물의 접근에 부과된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 즉 제한해제일자, 관할, 물리적 접근규정, 접근허용 이용자, 권한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에 대한 상세한 정보 대신 제한사실만을 간략하게 지시할 수도 있다.

DACS는 열람과 관련하여 열람제한조건, 물리적 열람, 기술적 열람의 세 개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열람제한조건(4.1)은 기증자, 보존소 또는 법적규정 등에 의한 접근제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열람제한조건에서는 기술단위를 열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법적 조건 등에 대해 기술하며 해당시 공개일자, 법적근거, 제한에 대해 간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의 연락처, 인가된 이용자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한조건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물리적 열람(4.2)은 기술단위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성, 보존위치로 인한 접근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이러한 제한에는 위치, 물리적 특성, 보존을 위한 원본 대신에 사본의 이용에 대한 요구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DACS는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시키는 기술단위의 물리적 특성 및 조건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치가 접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위치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본자료가 보존을 이유로 전혀 이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사본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해야 한다.

기술적 열람요소(4.3)는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같이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DACS는 수량요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기술단위를 보거나 열람하는데 필요한 특수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전자형태일 경우에는 접근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는 레코드를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모델, 메모리, 운영시스템명,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기타 필요하거나 추천된 주변장치의 특성 등을 적절한 순서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이용 및 복제조건(APPM2 1.7B12) / 복제 및 이용제한조건 (DACS 4.4)

APPM2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이후 기록물 이용을 통제하는 규정에 대해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복제·전시·각색·인용 등을 제한하는 저작권, 영화상연권, 매매제한 등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관할

지역, 권한, 인가된 이용자에 대해 부가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DACS는 열람이 제공된 이후 기술단위의 저작권, 재생산, 출판, 전시 및 방송 등의 기타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저작권 상태, 재생산, 출판, 이용과 관련된 진술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합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15) 누가색인/ 검색보조도구(APPM2 1.7B 13) / 검색보조도구(DACS 4.6)

APPM2에서는 등록부, 인벤토리, 캐런던 카드목록 등 기록물에 대한 행정적·지적 통제 도구의 존재를 지시하거나 주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Card index in repository”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검색보조 도구에 영향을 미친 행정적·전기적·물리적 통제의 정도와 출판 및 미출판된 검색보조도구의 인용에 관한 정보도 기술할 수 있다.

DACS는 기술단위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검색보조도구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며 해당시 검색보조도구의 유형과 매체, 내용, 이에 대한 위치나 이용가능성과 관련된 식별기호, 이용자들이 유용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정보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단위의 일부로서 생산자가 작성한 검색보조도구도 포함된다. 선택사항으로 검색보조도구의 사본을 구입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며, 정리와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기록물인 경우에는 보존소가 기술단위를 수집할 당시 존재한 행정적·지적 통제를 위한 기술도구와 참조가능한 기술도구의 존재에 대해 기술한다. 해당 자료

의 기술이나 기타 검색보조도구가 표준표나 참고저작물로 출판되었을 때에는 표준화된 간략한 형식으로 이 정보에 대해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16) 출판(APPM2 1.7B16) / 출판주기 (DACS 6.4)

APPM2에서는 해당 기록물을 이용, 연구 또는 분석(예를 들어 역사적 연구, 전기, 통계보고서)한 출판물에 대한 정보나 인용에 대해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인용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Publications’, ‘Portions published in’ 등과 같은 도입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Publications : Poetry : A Magazine of Verse 59 (1942) : 295-308”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물을 초록, 인용, 기술 색인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인용주기에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ACS도 APPM2와 마찬가지로 출판주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도입어구 대신 출판물과 기술단위간의 관련성을 지시하는 간단한 정보를 제시하며 여기에는 판사향을 주기하도록 하고 있다.

17) 일반주기(APPM2 1.7B17) / 주기 (DACS 7)

APPM2는 일반주기에 기타 정보영역에 적용시킬 수 없는 주요 정보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기사항의 하부 기술요소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 기술요소에 기술할 수 없었던 여러 유형의 표제 및 책임표시, 판사항 등 이 개별 기술요소를 보충하는 역할로서 주기사항을 다루고 있다.

DACS는 APPM2와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에 기입할 수 없는 정보를 일반주기에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과 인용, 숫자 문자 명시 주기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보존요소에서는 보존처리에 대해 기술하며 기술자료가 전자형태일 경우에는 관리상태의 이관 때까지의 이송이나 논리적 재포매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제시한다. 관련 문서의 위치를 지시해야 하며 디지털화에 대한 정보는 복제본의 존재 및 위치에 기술해야 한다. 인용주기에는 기술단위의 인용에 대한 지정 양식을 지시한다. 숫자-문자 명시주기에는 파일이나 아이템 계층에서 해당시 기술단위에 포함된 중요한 숫자에 대해 주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8) 생산자명(DACS 2.6)

APPM2는 표제 및 책임표시영역에서 단일 필사본의 표제지에 공식표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F). 예를 들면 "Divorce : holograph, [187-?] / by Augustin Daly"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필사본 컬렉션, 기록물 레코드, 서한 또는 기타 문서의 서명인은 책임기술 영역에 기술하지 않는다. 생산자명을 책임기술영역에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제의 일부로서 이름요소로 기술하도록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1.1B3).

DACS는 기록물의 생산배경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가 책임이 있는 개인, 가문, 기관을 식별하는 것이므로 생산자를 개별적인 기술요소로 제정하였다. 아키비스트는 기술대상 자료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그 관련성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료의 출처에

따라 생산자, 저자, 수집가, 작가, 지도제작자 등으로 표현한다. DACS는 생산자명을 레코드 기술의 한 요소로서 또는 별도의 전거파일로 링크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 기술계층(DACS 1)

APPM2는 기술계층을 기술요소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층 개수 및 단위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국립기록보존소의 모델을 따르는 아키비스트는 5개의 계층 즉, 레코드 그룹, 서브그룹, 시리즈, 서브시리즈, 파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계층에 따른 다른 용어 순서인 컬렉션, 시리즈, 서브시리즈, 파일, 문서, 아이템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의 상세수준에 따라 최소한의 기술요소 즉, 표제(일자포함)와 기록물의 수량이나 크기를 포함하는 첫 번째 수준과 기록물 편목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기술요소를 포함하는 두 번째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포함되는 기술요소를 규정하고 있다(1.0D).

DACS는 ISAD(G)2에서는 정리 및 기술의 5가지 계층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복잡한 기록물은 이보다 더 많은 계층을 포함하고 있어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계층요소를 단순하게 표준방식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기술정보를 모두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술계층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술계층과 관련하여 보존소의 요구사항에 따라 단일계층 및 다계층 기술을 위한 요소를 각각 최소, 적정, 추가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단일계층기술은 아키비스트들이 컬렉션, 레

코드그룹, 품, 레코드 시리즈와 같이 간주하는 넓은 축적에서부터 단일 아이টে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어떠한 계층에서든지 기록물 자료를 기술할 수 있으나 하나의 계층에서만 자료를 기술할 수 있다. 다음은 DACS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일계층 기술의 예이다.

- 준비이관레코드
- 기타 MARC21레코드와 연결되지 않은 MARC21 레코드
- 기록물 자료를 단일계층에서만 기술하는 보존소의 컬렉션 관리DB의 DB 레코드
- 기록물 자료의 기술을 위한 METS(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 레코드

다계층기술은 어떠한 계층에서든지(예 : 컬렉션 계층, 시리즈 계층) 기록물 자료를 기술할 수 있으며 최소한 하나의 하위계층을 포함해야 한다. ISAD(G)2는 기술프레임워크를 네 계층 즉, 품, 시리즈, 파일, 아이টে으로 인식하여 구상하고 있지만 DACS는 이를 준용하거나 기록물 자료의 정렬계층을 표현하는 기타 체계를 준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DACS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계층기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준비 컬렉션 인벤토리나 레지스터
- 완전한 컬렉션 인벤토리나 레지스터
- 다양하게 연결된 MARC21 레코드
- 하나 이상의 계층에서 기록물 자료를 기술하는 보존소의 컬렉션 관리DB의 DB레코드

20) 참조코드(DACS 2.1)

참조코드는 기술단위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

자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이다. DACS는 참조 코드의 세 가지 하위요소 즉, 지역코드 식별자, 보존소 코드, 국가명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코드 식별자에서는 다계층 기술시 가장 상위 계층에서 또는 단일 기술계층에서 기관의 행정 통제시스템에 부합되는 기술자료의 독특한 식별기호를 제시한다. 선택적으로 다계층 기술의 보다 하위 계층에서도 식별기호를 보충할 수 있다. 보존소 코드에는 이 코드를 할당하고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보존소 코드를 제시한다. 국가코드에는 국제표준 기관에서 할당한 보존소의 위치에 대한 국가코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21) 보존소명 및 위치(DACS 2.2)

보존소명 및 위치는 해당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보존소명과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요소이다. DACS는 모기관을 포함하여 보존소명을 지시하고, 보존소 위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우편주소와 기타 연락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2) 평가·폐기·처리일정 정보(DACS 5.3)

평가·폐기·처리일정 정보요소는 기술자료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적합한 평가, 폐기, 처리일정에 대한 설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DACS는 기록물의 폐기 또는 보유가 기술 단위를 해석,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경우 평가 또는 보유에 대한 정보와 확인 가능할 때에는 평가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시 폐기, 보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제시하고, 선택사항으로는 평가일자과 폐기일

자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추가(DACS 5.4)

추가요소는 이용자에게 기술단위에 대해 예상되는 추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DACS는 알려졌을 경우에는 추가의 유무를 지시하고, 해당시 발생빈도와 분량의 추정치를 기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24) 관련기록물 자료(DACS 6.3)

관련기록물 자료 요소는 출처나 활동측면, 주제에 따라 기술자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의 존재와 위치를 지시하기 위한 것이다.

DACS는 기술대상 자료와 활동측면이나 책임공유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의 표제, 위치, 참조코드(선택사항), 해당자료와의 관련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기술통제(DACS 8)

기술통제요소는 기록물 기술레코드를 작성하고 갱신한 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DACS는 이 기술요소를 이용출처, 기반이 된 규칙이나 협약, 작성 및 개정된 담당자명, 작성일자로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용출처에는 기술을 작성 또는 개정할 때 참조한 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며 규칙 및 협약에서는 기술을 준비할 때 준수한 국제, 국가, 지역규칙을 기술한다. 아키비스트 및 일자에서는 기술을 작성하거나 개정한 담당자명과 해당일자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4 분석결과 및 기술규칙 제정시 고려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APPM2와 DACS의 기술규칙 비교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ACS는 기록물 기술과 관련이 없는 APPM2의 표제 및 책임표시영역의 일반자료 표시, 대등표제, 기타표제정보, 종합표제가 없는 아이템요소와 판영역, 물리적 기술영역의 기타 물리적 상세사항, 크기, 주기영역의 연관저록, 인용, 기록물 기술에 대한 인용요소, 통일표제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영역과 요소는 기록물의 특성상 유일성 특성에 따른 기록물 자체보다는 단행본, 총서, 간행물 등 도서관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APPM2가 도서관의 목록규칙인 AACR2의 골격을 토대로 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DACS는 ISAD(G)2의 요소를 수용하여 APPM2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기술계층, 식별요소, 참조코드, 기술적 열람, 평가·폐기·처리일정정보, 관련기록물자료를 추가하였다.

둘째, APPM2에서의 주기사항의 하위기술요소를 DACS에서는 각각의 독립된 기술요소로 설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APPM2는 이력/내력, 원본 및 사본의 존재, 접근제한, 이용 및 복제조건 등의 요소들이 기록물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기술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도서관 자료의 편목에는 유용하지 않은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AACR2의 영향을 받아 개별요소가 아닌 주기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APPM2의 기타이용가능한 형식과 복제, 원본/사본위치 요소에 대한 기술규칙을 원

본의 존재 및 위치, 사본의 존재 및 위치요소로 구분하여 관련기술규칙을 통합시켜 명시하고 있다.

넷째, DACS는 ISAAR(CPF)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거레코드를 수용하기 위해 행정연혁 및 개인이력 요소에서 기록물 기술의 일부로서 이들 요소를 기술하는 경우와 개별적인 전거시스템으로 유지할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APPM2는 USMARC과 양립할 수 있도록 제정된 기술규칙인 반면에 DACS는 MARC21 뿐만 아니라 그 외의 EAD 등과 같은 다양한 검색보조도구를 수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반영하는 기술규칙은 일자요소와 행정연혁/개인이력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APPM2와 같은 MARC 기반 시스템의 경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일자만 기술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연혁 및 개인이력을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DACS는 EAD와 같은 시스템은 다양한 일자를 기술할 수 있고, 전거레코드나 다양한 검색보조도구의 경우에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제정될 우리나라 기록물 기술규칙은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 자료를 통합할 수 있고 또한 MARC 뿐만 아니라 EAD와 같은 다양한 검색보조도구의 기술규칙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표준과 이러한 동향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DACS의 기술규칙을 토대로 기록물 기술규칙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는 기록물의 증거적 특성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록물의 생산, 수집, 축적, 유지 및 이용과 관련된 일자의 형태는 다

양하다. 따라서 각 보존소에서는 일자의 유형과 상세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범위 및 내용요소의 상세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관정책 및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접적 출처 요소와 관련하여 수집과 관련된 정보는 기밀사항으로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보존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레코드에 포함시킬 정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량요소의 경우 간행물은 비교적 일정한 포맷과 크기와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기록물은 다양한 매체에 담겨 생산되거나 보존된다. 따라서 매체의 유형과 그 다양한 유형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방식의 측정수단에 대한 표준화와 용어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록물의 지적인 내용에 책임이 있는 개인명이나 단체명은 검색에서 우선적으로 접근점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산자명에 대한 규칙은 온라인 환경에서 모든 관련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ISAD(G)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자명은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전거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은 기술업무가 목적으로 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에 전거제어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기요소는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보존소는 주기사항에 다루게 될 주기종류와 상세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DACS와 ISAD(G)2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계층에 관한 규칙이다. DACS에서 명

시하고 있듯이 기록물의 기술계층은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계층보다 더 많은 수의 계층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계층요소를 단순하게 표준방식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기술정보를 모두 연결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보존소의 요구사항에 따라 단일계층 및 다계층 기술을 위한 요소를 최소, 적정, 추가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이용자들은 도서관 자료 뿐만 아니라 기록물에 대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정보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원의 출처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은 통합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웹, XML, EAD 등의 다

양한 검색보조도구의 등장으로 기존의 기록물 기술규칙은 기존의 목록레코드와 검색보조도구에 대한 규칙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기록물 기술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법령에 의해 대학보존소가 설치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도서관에서는 기록물을 온라인시스템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미국의 기록물 기술표준 DACS와 APPM2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MARC 뿐만 아니라 EAD와 같은 다양한 검색보조도구의 기술규칙을 통합할 수 있도록 제정된 DACS의 기술규칙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록물 기술규칙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김영지. 2002.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구 : ISAD(G)2 데이터요소로 분석한 APPM2, RAD 1998-2000 통합개정판 MAD2의 기술규칙 비교』,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이소현. 2002. 『ISAD(G)2를 적용한 한국 기록물 기술규칙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경신. 2004. 미국의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

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125-147.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0. *ISAD(G)2 :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second edition*. Ottaw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ommittee on Descriptive Standards.

“Could This Be the Beginning of a Beautiful

- Friendship : A Comparison of the Description and Access to the Object of Interest Between the Libraries and Archives". [online][cited 2005.05.15] <<http://www.ifra.org/IV/ifa66/papers/125-164e.htm>>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1989. *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 2nd edition*. Chicago.
- _____. 2004. *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 Chicago.
- _____. 1994.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 A Handbook". [online][cited 2004.12.10] <<http://www.archivists.org/catalog/stds99>>

K C I

к с і